



보도시점

2024. 10. 14.(월) 06:00

10. 14.(월) 석간

배포

2024. 10. 11.(금) 16:00

농식품부, 낡은 규제 혁파로 농업·농촌 구조혁신 이끈다!

- ①계획 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설치 전면 허용, ②반려동물 등록·변경신고 민간 앱까지 확대, ③예비 청년농에 농기계 임대 등 50개 규제혁신 과제 확정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10월 14일(월)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스마트팜·반려동물 등 분야별 업계,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‘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’를 개최하였다.

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‘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(TF)’을 구성하고,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·개선 중이다.

이번 회의에서는 ‘농정의 3대 전환(디지털·세대·농촌공간)’을 뒷받침하기 위해, 파급효과와 중요도·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하였다.

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진입·입지 제한 완화 분야

△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,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,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(‘25.1월, 「농지법시행령」 개정)한다.

△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(‘25.1월, 「농지법시행령」 개정)한다.

△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하여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.

② 新 산업 지원 강화 분야

반려동물 연관사업 지원을 강화 위해 △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(「수의사법」 개정)하고, △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그간 지자체 방문, 정부24 등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·정보조회 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에서 제공한다.

△또한 농식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과·배 껍질, 발효 느타리버섯 재배 부산물 등을 사료·화장품·식품 원료로 업사이클링(재활용)하여 폐기물을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(실증특례) 확대, 관련 제도를 정비(환경부 협업)한다.

③ 민생·경제 활성화 분야

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△ 현행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(정가·발주·입찰 거래)을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동구매,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(‘24.11월, 「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」 개정)하고, △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다.

또한, 농업인의 소득·경영안정을 위해 △국가산단 등 편입 농지는 공사 개시 전까지 영농시 직불금 지급 허용, △임야 양봉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허용(‘24.10월, 「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영규정」 제정)한다.

④ 청년·인력·고용 지원 강화 분야

농촌 활력을 높이는 청년농 유입을 위해 △ 농업인만 가능한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허용(‘24.12월,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」 개정)하고, △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·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. 또한 △가축개량·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.

⑤ 현장 애로 해소 분야

△친환경인증 생산과정 조사 완화(‘25.6월, 「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」 개정), △음식점 전자매체(태블릿 PC 등)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, △마을형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허용(‘24.12월, 「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 지침」 개정)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.

송미령 장관은 “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는 ‘농정의 3대 전환(디지털·세대·농촌공간)’과 농업·농촌 구조혁신’을 가속화할 것”이라며, “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·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,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강조했다.

붙임 제6차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요 과제
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문지인 (044-201-1361)
		담당자	사무관	박순홍 (044-201-1362)



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주요 과제

전 체	① 진입·입지	② 신산업	③ 민생·경제	④ 청년·인력·고용	⑤ 현장애로
50건	9건	13건	9건	6건	13건

1. 진입·입지 제한 완화 * 3건

①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 허용

- ▶ **(현황)** 수직농장은 농업진흥구역 외 지역에서만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 설치 가능
- ▶ **(개선방안)** 농업진흥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농촌특화지구,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적 입지에 한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 이용행위로 설치 가능
(「농지법 시행령」 개정, '25.1월)
- ▶ **(기대효과)** 새로운 농업생산방식의 농지 입지규제 개선으로 수직농장 확산 및 관련 산업 육성('22. 8백억 원→'28. 90백억 원)에 기여

②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

- ▶ **(현황)**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농지 전용허가를 통해 농업보호구역 또는 농업진흥 지역 밖에서 설치 가능
- ▶ **(개선방안)** 농업진흥구역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설치 허용
(농지법 시행령 개정, '25.1월)
- ▶ **(기대효과)** 농업인 영농 활동 편의성 제고 및 농업생산지원 시설 기반 확충

③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농업 전후방산업 분야까지 확대

- ▶ **(현황)** 농업법인의 농지소유, 세제 혜택을 악용하지 않도록 영농관련법인 사업 영위토록 제한적 운영
- ▶ **(개선방안)**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, 가축분뇨자원화시설, 농어촌형승마시설, 스마트 농업 기자재 생산공급, 태양광발전시설, 영농 경영기술 교육, 농산물(생산가공유통) 연구개발사업 등 사업범위 확대(「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」 개정, '25.6월)
- ▶ **(기대효과)** 농업법인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및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

2. 新산업 지원 강화 * 4건

① 반려동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

- ▶ **(현황)** 반려동물 양육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의사는 해당 동물에 관한 진료 기록 등 제공 의무 부재
- ▶ **(개선)**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의사가 해당 동물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을 발급*하도록 의무를 부여(「수의사법」 개정)
 - * 단, 무자격자에 의한 자가 진료, 의약품 오·남용 등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사고 여부 확인, 보험금 청구 등 일부 목적에 한정하여 기록 제공 의무화
- ▶ **(기대효과)**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하고, 반려동물 양육자의 동물병원에 대한 불만* 해소
 - *과잉진료 의심(14.2%), 진료항목에 대한 정보제공 없음(10.0%) 등(한국소비자연맹 조사, '21)

② 민간 협력,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·정보조회 서비스 확대

- ▶ **(현황)** 동물등록 변경신고·정보조회는 지자체 방문,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서만 가능
- ▶ **(개선방안)** SK텔레콤, LG유플러스, 국민은행 등 국민에게 친숙·편리한 민간앱으로 동물등록 변경신고·정보조회 서비스 제공(「디지털서비스 개방사업」 참여, '25.6월)
- ▶ **(기대효과)** 민간 앱을 통한 동물등록조회·변경* 서비스 제공으로 동물등록 제도 홍보 및 펫보험 정보 제공 확대로 펫보험 가입 활성화
 - * 반려동물 등록: 342만마리('24.8기준), 변경신고 건수: ('23) 241천건 ('24.8) 162천건

③ 양파 껍질을 활용한 동애등에 사료 개발 **환경부 협업**

- ▶ **(현황)** 양파 가공시 발생하는 양파 껍질은 사료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나 단미사료 기준 및 규격이 부재하고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 필요
- ▶ **(개선방안)** 규제샌드박스(실증특례)를 통한 단미사료 공정 및 기준 마련(「순환경제 신기술·서비스 실증특례」승인, '24.11월)
- ▶ **(기대효과)** 부산물 폐기 감축으로 인한 탄소배출 감소 및 농산부산물 관련 산업 활성화

④ 발효 느타리버섯 부산물을 곤충의 먹이원으로 활용

- ▶ **(현황)**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먹이원으로 목재에서 유래한 "발효톱밥"만 규정
- ▶ **(개선방안)** 먹이원으로 "발효 느타리버섯 재배부산물" 추가(「곤충의 사육기준」 개정, '25.6월)
- ▶ **(기대효과)** 부산물 활용으로 생산비용 절감(740원/L→583, △21%), 유충 생산량 증가(25%↑)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

3. 민생 · 경제 활성화 * 4건

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 다양화

- ▶ **(현황)** 현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정가거래, 입찰거래, 발주거래 가능
- ▶ **(개선방안)** 소상공인을 위한 **공동구매, 장기 예약거래, 간편거래** 등 다양한 거래 방식 추가 구현(「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」 개정, '24.11월)
- ▶ **(기대효과)** 거래 및 이용자 편의* 제고로 연말까지 판·구매자 24.1%(2.5천 개소 → 3.2) 증가 하는 등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

* 공동구매는 다품목·소량 통합배송으로 소상공인의 상품 구색맞춤 구매 가능, 예약거래는 보다 장기화된 거래로 구매 예측가능성 향상

②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금액 지원 한도 상향

- ▶ **(현황)** 1억 원 이상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 및 조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개소당 **최대 30백만원 지원**
- ▶ **(개선방안)** 국내산 식재료 공동구매(2억원) 시 **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지원**(식재료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지원)(「푸드서비스사업지침」 개정, '25.1월)
- ▶ **(기대효과)** 외식업체 경영비 절감 및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*

* 現) 10백만원 지원 시 국산 식재료 33백만원 구매 → 改) 국산 식재료 40백만원 구매(21%↑)

③ 국가산단 등 편입으로 전용 협의된 농지에 대한 직불금 지급 개선

- ▶ **(현황)** 산업단지 편입 등으로 농지전용 협의(의제)된 농지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
- ▶ **(개선방안)**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 편입으로 전용 협의된 농지 중 **보상을 받지 않고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** (「공익직불기본계획」 수립 시 반영, '24.12월)
- ▶ **(기대효과)** 공익사업 등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농지가 지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농지 경작자 혜택 **약 32억원 증가**

* 최근 3년간 평균 우리 부 농지전용 협의면적(17,843ha)×'23년 직불금 평균 지급액(179만원/ha)

④ 임야에서 양봉하는 농가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허용

- ▶ **(현황)** 농지(밭, 과수원 등)에서 양봉을 하는 농가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나, **임야에서 양봉을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불가**
- ▶ **(개선방안)** 「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“양봉농가 등록증”과 연간 꿀 판매액 **120만 원 이상**을 증빙하는 경우,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등록 기준 신설 (「농업 경영정보등록 기준의 세부내용 및 운영규정」 제정, '24.10월)
- ▶ **(기대효과)** 임야에서 양봉에 종사하는 농가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양봉산업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 * 꿀벌 사육 농가수: 28천 개('23.8월 등록 현황)

4. 청년·고용 지원 강화 * 4건

① 청년예비농에 농기계 임대 허용

- ▶ **(현황)**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사업 농기계 임대 대상을 농업인으로 한정
- ▶ **(개선방안)** 농기계 임대 대상에 **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선정자** 추가
(「2025년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」개정, '24.12월)
- ▶ **(기대효과)** 청년 예비농의 영농 초기 농기계 구입부담 약 83억원 경감 기대
* 3,914명(청년예비농) × 2.14백만원(5.67백만원(트랙터 등 주요 5개 기종 연간 구입비) - 3.53백만원(연간임대료))

②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·임차 가능지역 확대

- ▶ **(현황)** 「국토계획법」 따른 **용도지역**(보전관리지역·생산관리지역·농림지역)내에 한하여 후계농이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저장시설, 가공·제조용 시설의 **설치·임차 가능**
- ▶ **(개선방안)** 시설 설치 시 「국토계획법」 및 「농지법」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준수 한다면 **설치·임차 가능**(「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지침」 개정, '24.12월)
- ▶ **(기대효과)** 청년농·후계농은 본인의 농산물 가공·제조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, 영농규모나 소득 확대에 기여

③ 가축개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자격요건 완화

- ▶ **(현황)** 축산산업 기사가 가축개량기관에 취업하려면 **자격 취득 후에도** 가축육종·유전분야에서 **2년 이상의 실무종사 경력**을 추가로 요구
- ▶ **(개선방안)** 가축육종·유전분야 직종에 종사하면서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, **자격취득 전의 경력까지 실무종사 경력에 포함**(「축산법 시행령」개정, '24.12월)
- ▶ **(기대효과)** 가축개량기관 취업 규제 완화로 청년 등의 구직활동 촉진 기대

④ 가축검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자격요건 완화

- ▶ **(현황)** 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*에 축산산업기사 자격 취득자는 미해당
* 가축 육종·유전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, 축산관련 학과 졸업 후 3년이상 경력 자, 축산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
- ▶ **(개선방안)** 축산산업기사 자격 보유한 자도 **가축 육종·유전분야 2년 이상 경력**이 있는 경우 **채용할 수 있도록** 개선(「축산법 시행규칙」개정, '24.12월)
- ▶ **(기대효과)** 가축검정기관 취업 규제 완화로 청년 등의 구직활동 촉진 기대

5. 현장 애로 해소 * 3건

① 친환경인증 생산과정조사 완화

- ▶ **(현황)** 친환경인증 농가대상 인증 건별 매년 1회 이상 정기조사 실시
- ▶ **(개선방안)** 친환경 유기인증 모범농가* 대상 2년에 1회 조사로 완화(「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」개정 '25.6월)
* (면제대상) 유기인증+12년이상 연속 인증유지+최근 2년간 행정처분 내역이 없는 인증사업자
- ▶ **(기대효과)** 조사주기 완화로 취약 인증농가에 대한 효율적 관리 가능
* 수혜대상 유기인증사업자 향후 3년간 4,215호 예상, 비용 1,558만원 절감

② 음식점 전자매체(태블릿 PC 등) 원산지 표시방법 완화

- ▶ **(현황)** 원산지를 표시를 음식명 옆 또는 아래에 하도록 하여 한정된 화면크기에 원산지 정보가 메뉴마다 노출되도록 화면 개발·관리 비용 발생
- ▶ **(개선방안)** 음식명 옆이나 위 또는 아래에 표시하거나 별도 창을 통해 첫 화면에 표시 가능(「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」개정, '24.12월)
- ▶ **(기대효과)** 소비자 원산지 정보 가독성 향상, 전자매체(태블릿pc 등) 보수·관리 편의성이 높아서 관련 비용 유지관리 업체당 약 210백만원(추정) 절감

③ 마을형 퇴비저장시설사업 지원요건 완화

- ▶ **(현황)**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사업은 고체연료·바이오차 생산시설과 연계된 경우 지원
- ▶ **(개선방안)** 처리 시설과 연계없이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 가능`토록 개선(「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지침」 개정, '24.12월)
- ▶ **(기대효과)** 개별처리가 어려운 마을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자원화 하여 부숙도 관리 및 악취저감 등의 효과 기대
*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1개소 설치 시 연간 2,642톤 분뇨 처리 확대 등